

의안번호	2217260
의 퇴 인	이재관 의원
회 답 일	2026. 4. 10.
추계번호	26A131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7 (교육명령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6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그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8조의8 (과징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및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12조의2 (피해 회복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입증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원 - 2. 침해 사실의 입증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전문가 자문 등 법률 지원 - 3.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과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또는 기술 간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및 분석 지원 -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또는 회복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조의8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7(교육명령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의8(과징금)	
3	안 제12조의2(피해 회복 지원)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벌점기준에 따라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원, 법률 상담 등 법률 지원 등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는 벌점을 받은 법인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피해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
 - － 개정안은 ①제8조의7을 신설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받은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②제12조

- 의2를 신설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입증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재정수입의 증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발생
 - **안 제8조의8**은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기업과 국가 간 교육비용 부담 여부, 기존의 피해회복 지원 사업의 확대·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규모,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별점 부과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조치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교육명령을 부과하는 별점기준,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 여부 및 수준 등을 가정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 온 손해액 산정지원 및 법률 자문 지원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규모,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감정 및 분석 지원 등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규모 등을 가정하여야 하나, 현재는 관련 자료가 부재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참고자료 2] 손해액 산정 지원
 - **과징금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 현재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법인 소속 임직원

대하여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순 재정부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654	shjang@assembly.go.kr

[참고자료 1]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목적)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심층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능력 제고
 - * 지원단 구성 : 기술보호분야 전문가 105명(변호사68, 변리사37)
- (지원규모) 50개사 목표 *'26년 6억원
- (지원내용) 기술보호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사전예방부터 사후구제까지 법무 지원(연중수시)
 - (법무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및 기술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법무 지원
 - * 영업비밀 및 지재권 관련 계약서,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 ** 기술유출, 분쟁대응 방향설정 및 소송·행정조사 준비를 위한 서면작성 등 지원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자문료 지원 기준 >

지원유형	지원기간 및 시간	기업부담금
사전예방	최대 3개월, 60시간(15백만원 수준)	무료지원
사후대응	최대 6개월, 80시간(20백만원 수준)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침해구제) 기술유출 피해기업에게 법무지원단 내 전문 소송변호사*(침해구제팀, 17명)를 통한 민사소송 지원(80%, 최대 4천만원)
 - * 지원조건: ①행정조사를 통한 침해사실 확인, ②전문 소송변호사 선임, ③지원심사 결과 70점 이상 획득

□ 지원현황

- 지원실적: '26.1월 기준 0건 (누적 851건)

(단위 : 건)

구 분	접수	지원완료	지원 중
'18년	60	60	—
'19년	47	47	—
'20년	164	164	—
'21년	183	183	—
'22년	161	161	—
'23년	74	74	—
'24년	85	85	—
'25년	77	77	—
'26.1월	—	—	—
계	851	851	0

[참고자료 2] 손해액 산정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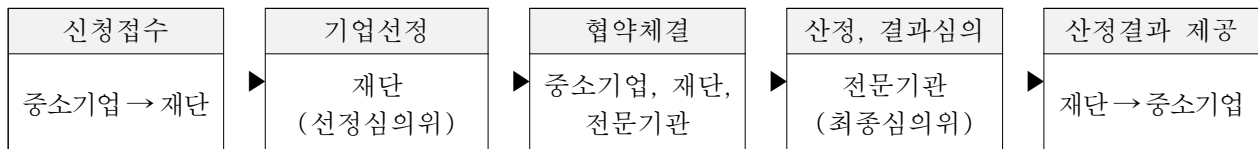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추진배경)**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 지원’ 추진(‘23.3~)

* (근거) 국정과제 67-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손해액 산정 현실화”

- **(사업예산)** 12.5억원
- **(지원절차)**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통해 손해액 산정 지원

< 손해액 산정 지원 세부 절차 >



- **(지원내용)** 전문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피해)중소기업	최대 45백만원	50~90%	10~50%, 부가세 별도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지원실적)** 접수 총 31건 중 19건 지원완료, 4건 산정중 (’26.1월말 기준)

No	구 분	신청유형	기술유형	침해내용	산정범위	비 고
1	2023	민사소송	특허	다수 기업의 특허기술 침해	특허기여율, 실시료율	-
2	2024 (8)	민사소송	영업비밀(R&D)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기술가치, 기술기여도	-
3		민사소송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한계이익률	-
4		민사소송	영업비밀(SW)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한계이익률, 실시료율, 기술가치	-
5		민사소송	특허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기술가치	-
6		민사소송	특허,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한계이익률, 실시료율, 기술가치	-
7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기술가치	-
8		민사소송	특허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한계이익률(83.97%)	-
9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기술가치(연구개발비, 사업수익손해)	-
10	2025 (10)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연구개발비, 기술가치, 한계이익(률)	경찰청연계
11		행정조사	영업비밀, SW	거래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침해자이익액, 한계이익률	-
12		민사소송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연구개발비손해	경찰청연계
13		민사소송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한계이익, 연구개발비, 기술가치	경찰청연계
14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기술가치(2종), 한계이익률	경찰청연계
15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연구개발비, 기술가치평가	경찰청연계
16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한계이익(률), 연구개발비, 기술가치	-
17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한계이익률, 실시료율, 연구개발비, 기술가치	경찰청연계
18		소송준비	영업비밀	미거래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한계이익(률)	경찰청연계
19		소송준비	영업비밀	퇴직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기술가치, 한계이익률	경찰청연계